

# 예 산 총 칙

제1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비 고
합 계	6,819,396,000	204,581,880	
일 반 회 계	6,276,000,000	188,280,000	
특 별 회 계	543,396,000	16,301,8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청소재도시건설</li> <li>• 균 형 발 전</li> <li>• 안면도관광지개발</li> <li>• 의 료 급 여 기 금</li> <li>• 광 역 교 통 시 설</li> <li>• 학 교 용 지 부 담 금</li> <li>•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li> <li>•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914,000</li> <li>40,954,000</li> <li>5,830,000</li> <li>358,428,000</li> <li>7,163,000</li> <li>23,993,000</li> <li>17,520,000</li> <li>85,594,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7,420</li> <li>1,228,620</li> <li>174,900</li> <li>10,752,840</li> <li>214,890</li> <li>719,790</li> <li>525,600</li> <li>2,567,820</li> </ul>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과 같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과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700,590천원으로 한다.

(일반 18,099,700천원, 목적 10,000,000천원, 내부유보금 10,600,890천원)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77,7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차입금 원금 상환금, 차입금 이자 상환금
- ③ 재해 대책 및 복구 경비

제9조 기구·직제 개편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개정으로 부서간 직무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업예산 구조화를 통하여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